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6일, 박정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3.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훈의원)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

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라 범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범죄 등에 사용될 것이 분명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의 제조·수입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개정안은 사기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공익 목적 등 예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죄 행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